

2023 익산한별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개정(안)

안건 번호	2
----------	---

발 의 일 자 : 2023.12.13.

제 안 자 : 학교장

담 당 자 : 강**

I. 제안사유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2023.9.1.)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II. 관련규정

-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2023.9.1.)

III. 개정 주요내용

1. 제3조 및 제4조 근거 및 용어의 재정의 내용 추가
2. 제9조 제7항, 제8항 수업태도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
3. 제19조 제7항, 유해성 약물에 대한 내용 추가
4. 제22조 제1항, 제4항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
5. 제24조 제4항, 학교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용어 삭제
6. 제30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 권한 내용 수정
7. 제31조 교원의 교육적 조치 내용과 관련 기준 추가
8. 제33조 제1항, 제5항, 제6항 소지품 검사 대한 내용 수정 및 추가
9. 제44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 추가
10. 제45조 및 제46조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이의제기 내용 추가

IV. 개정 세부 내용

- 붙임 문서 참고 : 2023 익산한별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익산한별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정 2006.03.31.

제1차 개정 2011.04.29.

제2차 개정 2017.09.22.

제3차 개정 2021.07.23.

제4차 개정 2023.12.26.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익산한별초등학교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 ①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 개개인의 인권과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근거한다.

제4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③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를 말한다.
- ④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⑤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⑥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⑦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⑧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⑨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및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①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 ② 「익산한별초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학칙 제29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전반(학생 생활,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각 업무 부장교사와 학년 부장, **상담교사 등으로 할 수 있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구성원 중 선출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부장을 주무로 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부재시 그를 대신한다.

제7조 [의결 정족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8조 [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9조 [수업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⑦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⑧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며,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학생들은 교내에 시설물 및 비품 등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들은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 ④ 학생의 소지품 일괄 검사는 금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33조에 준한다.

제12조 [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에 존중하며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13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남·녀 학생 간 예절을 지키며 서로 존중한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 또는 원하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질계발 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 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반강제적 동의서 작성은 절대 금하며 방과 후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② 동아리활동은 건전하고 교육적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에 맞게 활동하여야 하며 지도 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둔다.

제15조 [여가 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보건실, 강당, 도서관, 과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키고 시설물을 아껴 쓴다.
- ③ 실내·외에서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16조 [용의사항] 용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비싼 신발보다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 ⑤ 두발은 단정하고 자유로운 모양으로 한다.
- ⑥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7조 [학급 내 봉사 활동] 학급 내 봉사 활동(일인 일역)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모두가 학급 내 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 환경 정돈, 건전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 비품의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8조 [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2 절 교외 생활

제19조 [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생활 중 만나는 교직원 또는 학생 간에는 서로 예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0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3 절 정보 통신 윤리

제21조 [정보통신윤리]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며,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2조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수업시간(하교 시 즉시 반환) 동안 해당 전자기기를 분리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 4 절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23조 [학생자치활동]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은 ‘익산한별초등학교 규칙’ 제10장 학생자치 활동 조직 및 운영에 의한다.

제 4 장 학생 생활 지도

제 1 절 생활 지도

제24조 [안전 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④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안전도우미회를 운영한다.
- ⑤ 현장 학습 시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5조 [진로 지도] 진로 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 매 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④ 진로 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26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월1회 이내)
- ④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¹⁾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28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29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학생인권조례 9조)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1)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적 지도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0조[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교육적 상담(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조언
- ③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④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장 발달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언어 사용 등의 의사소통 포함)
- ⑦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⑧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⑨ 비행 및 범죄 예방
- ⑩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⑪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 제1항 조연 및 제3항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31조 제4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한다.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수업 시간 내 일부,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한다.
 - 4) 제3호의 지도에도 개선이 없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인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로 분리(수업 종료 시 까지)한다.
 - 5) 제4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장소로의 분리한다.
 - 6) 제1호에서 제5호의 학생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교원은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등)하고 행동 성찰문 등의 요구 가능하며,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는 본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 7) 또한 학생의 분리 과정에서 각 호의 방법 전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준 후 실시하며, 특정 또는 지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교직원이 학생을 인계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 8) 정규수업 이외에 특정 또는 지정 장소로 분리할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한다.

7.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31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생 생활규정 제32조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10. 제31조 제9항 제1호 물품의 분리 보관이 이루어진 경우, 정규수업 종료 후 하교 시에 즉시 돌려준다.

11. 교원은 제6항의 제3호·제4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언, 제2항에 따른 상담, 제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2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항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⑤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도색잡지 등)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⑧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 ⑨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25) 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33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과 함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제31조 제4항 제8호에 의해**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2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거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32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32조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거나,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⑥ **소지품 검사 후 분리 방법은 다음 호와 같다.**
 - 1. 소지품 검사 후 물품은 학생에게 분리의 사유를 알리고,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3일간 보관한다.
 - 2. 학생으로부터 소지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한다.(학교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 작성 및 관리)
 - 3. 학생으로부터 받은 소지품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 4.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 학생 생활업무 담당자가 폐기 조치한다.**
- ⑦ 소지품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 [교외 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 기관, 시민 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 2 절 학생의 징계

제35조 [징계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6조 [학생의 징계 등]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내 봉사²⁾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³⁾
 5. 제31조의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상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간단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수·학습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수차 경고 및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경우
 2. 학습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교내 생활규칙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
 4. 기타 교사가 판단하여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
- ⑤ 제1항 제5호의 담임교사 경고 및 상담 후에도 학생의 변화가 없고 타 학생에게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소집 및 협의를 통해 학부모 상담 및 제1항 제3호 이하의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4호의 출석정지라 함은 학급수업 출석의 정지이므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등교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자습하거나 개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학생징계세부기준] 교장은 제36조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①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여부 및 그 정도

2)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3)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가능

- ⑤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⑥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⑦ 학칙 제35조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제2장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정리활동
 -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1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실질적 책임을 진다.

- ① 가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생이 징계와 관련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3 절 기타

제4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5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47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인성인권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인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익산한별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36조 관련)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1. 학생의 징계 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징계행위 심각성	징계행위 지속성	징계행위 고의성	구분	징계학생 반성 정도	피해자와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징계 행위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약자인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4호 ⇔ 2호 ⇔ 1호

※ 학교내의 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2. 징계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점수	조치 내용
0~6	-
7~9	학교내의 봉사
10~12	사회 봉사
13~15	특별교육이수
16~21	출석 정지